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시행되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종전의 표현 중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을 관계 기준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근거 및 정의, 적용범위 등을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특정용도 자동차에 대한 지원,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다른 조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표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수정하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을 관계 기준에 따라 수정하려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